일본 정치와 경제

일본어일본학과

21402327

박현욱



일본 천황기

일본 천황은  일본의 군주로, 일본 황실의 대표이자 일본의 상징적인 국가 원수이다. 일본의 주권을 가진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한 일본의 상징이자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다. 또한 일본의 천황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황실 중 하나다.

역사적으로는 일본 전통 종교 신토의 주신인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를 숭배하는 교파의 대표였던 사람을 부르는 명칭이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국가신토의 사실상 교주이자 일본 제국의 대원수로 추대되기도 하였으나, 패전 이후 새롭게 시행된 현 일본국 헌법에서는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과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본국 헌법에 국가원수에 관한 직접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국가원수가 수행하는 주요 행위인 '국사에 관한 행위, 즉 내각총리대신과 최고재판관장관의 임명, 헌법・법률・정령 및 조약의 공포, 국회의 소집, 중의원 해산 등의 권한이 '상징적'으로 천황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일본 내외의 헌법학계에서는 천황을 일본의 국가원수로 인정한다.

또한, 천황은 비록 권력은 없지만 신성 불가침의 존재이고, 천황의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는 불경죄로 의율하여 중하게 처벌한다.

실제로 천황을 비롯한 일본 황실은 성씨가 없다. 성씨는 인간이 가지는 것으로, 일본 신화 구조상 천황은 '보통 인간'이 아니고 신의 혈통에서 직계로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천황의 역사를 간단하게 알아보면 기록상 최초의 천황은 진무(神武) 천황 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천황은 군사측면과 제사측면의 두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

고대에는 오오키미라 불렸다. 645년 다이카 개신으로 천황중심의 정치가 시작되었고 천황이라는 호칭도 사용되었다. 시간이 흐르며 귀족 무인정치체제였던 중 · 근세에는 지위가 하락하게 되면서 천황의 지위도 또한 하락하게 되었다.

이후, 1868년 메이지 유신으로 중앙집권체제가 확립되면서 권력 회복하게 되었지만 예전만큼의 권력을 갖지는 못하게 되었다.

2차대전 패전 후 쇼와천황의 이른바 ‘인간선언(人間宣言)’을 계기로 신성부정, 국가와 국민통합의 상징적 존재로 규정을 하게 되었다. 천황도 같은 인간이라는 말로 해석을 하게된다.

상징적인 일본 천황

현재 일본에서는 천황을 국가원수 라기보다 상징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른 입헌군주제 국가와 달리 일본의 경우 천황에게 의회 해산 권한이 없을 뿐더러 대부분의 권한은 총리가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궁내청에서 황제일가의 행동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통제를 한다고 한다. 하고자 하는 것 10개 중에서 9개는 궁내청에서도 거절한다고 할 정도로 인가를 받는 것이 매우 까다롭다고 한다.

현재 일본의 황제의 경우 황제라는 상징성이 짙기에 더욱 조심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렇기에 일본 내 언론, 만화 애니메이션에서도 황제에 대해서는 자극적으로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고 한다.

천황의 일본 헌법

상징적인 일본의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일본의 헌법 1조부터 8조까지는 천황의 규정과, 천황이 해야 할 의무, 권리가 적혀있다.

일본국 헌법은 또 다른 말로 평화헌법 이라고도 부른다.

일본국 헌법 제 1조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고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 이 지위는 주권이 있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초한다.

일본국 헌법 1조는 일본국 헌법의 첫 조항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한다. 이 규정은 천황에 대해 규정하는 제1장에 놓인 규정이지만, 그 내용은 천황이 상징적 지위에 있다는 것, 또 앞으로도 그렇게 존재할지의 여부는 오로지 주권이 있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따라 결정된다고 규정, 즉, 상징 천황제, 국민주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국 헌법 제2조 황위는 세습되며, 국회가 의결한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계승한다.

황실전범에 따르면 황위는 황통에 속하는 남계의 남자가 다음 순서에 따라 계승한다. 그러나 역대 일본 천황계보를 살펴보면 여자가 천황이 된 경우도 여러번 있었다. 특히 고교쿠 천황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천황에 즉위했다.

다만, 황사에게 정신이나 신체상 불치의 중환이 있거나 중대한 사고가 있을 때에는 황실회의의 협의를 거쳐 위의 순서에 따라 황위계승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일본국 헌법 제3조 “천황의 국사의 관한 모든 행위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요하며, 내각이 그 책임을 진다.

일본국 헌법 제4조에서는 천황이 “헌법이 정한 국사에 관한 행위만을 행하며, 국정에 관한 권능은 갖지 않는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일본국 헌법 제5조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섭정을 둘 때는, 섭정은 천황의 이름으로 그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이 경우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섭정을 두는 경우에는 천황이 미성년일 경우이거나, 천황이 정신·신체적 중환 또는 중대한 사고로 인해 국사행위를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로, 황실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섭정을 둔다고 한다. 실제로 히로히토(쇼와 천황) 천황이 섭정을 한적이 있다고도 한다.

일본국 헌법 제6조 “① 천황은 국회의 지명에 의거하여 내각총리대신을 임명한다. ② 천황은 내각의 지명에 의거하여 최고재판소의 장인 재판관을 임명한다.”

그러나 내각총리대신, 최고재판소 장관과 더불어 삼권의 하나인 입법부에 해당하는 국회의 양원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중의원 의장 및 참의원 의장에 대한 천황의 임명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국 헌법 제7조 “천황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의하여, 국민을 위하여 다음의 국사에 관한 행위를 행한다”

|  |
| --- |
| 1.헌법 개정, 법률, 정령 및 조약을 공포하는 일. |
| 2.국회를 소집하는 일. |
| 3.중의원을 해산하는 일. |
| 4.국회의원 총선거의 시행을 공시하는 일. |
| 5.국무대신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관리의 임면과 전권위임장 및 대사(大使) 및 공사의 신임장을 인증하는 일. |
| 6.대사(大赦), 특사, 감형, 형의 집행 면제 및 복권을 인증하는 일. |
| 7. 영전을 수여하는 일. |
| 8. 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외교 문서를 인증하는 일. |
| 9. 외국의 대사 및 공사를 접수하는 일. |
| 10. 의식을 행하는 일. |

일본국 헌법 제8조 “황실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황실이 재산을 양도받거나 혹은 사여하는 것은 국회의 의결에 의거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